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96호 2026. 3. 30.(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예천군 조례 제2729호)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0호)
-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1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2호)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3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4호)
-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5호)
-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736호)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37호)
-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738호)
-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739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740호)

규 칙

-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36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29호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의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2.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의 시행
3.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제1조 ~ 제4조)

나.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저감대책 규정(제5조 ~ 제6조)

다. 예천군 소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제7조)

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 교육·홍보(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0호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30.>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				
피해농업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피해현황	피해지역	예천군	읍·면	리 번지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기간	. . . ~ . . . (일간)		
	경작지면적	m ²	피해면적	m ²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본인은 아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금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1.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작물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증명서 1부 2.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3. 30.>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피 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예천군 읍 · 면		
피해보상금 산정결과	④ 피 해 보 상 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본인은 위 피해보상금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금을 중복수 령한 것이 확인될 경우 피해보상금 일체를 반납하겠습니다.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 사본				

◇개정이유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 시 피해보상 제외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 본인확인란 신설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1호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임대료”를 “임대료,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요금, 카드수수료”를 “전기요금”으로 한다.

7.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카드수수료 지원,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군민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상공인 지원내용 추가(제3조)
 - 카드수수료, 공공배달 플랫폼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2호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를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

환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을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한다.

제9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속 고충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반영과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제한 조치 및 위반 행위의 공개를 통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불 기준 및 면책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수단 확대(제3조)

- 신청 수단 : (당초) 군수의 허가 → (변경) 군수 또는 통합예약시스템

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예약현황 공개(제3조)

-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다. 사용료 환불 처리 기한 신설(제8조)

- 처리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반환

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면책 기준 확대 및 구체화(제8조)

- 면책 기준 : (당초) 천재지변 및 우천 → (변경)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고가 발생 혹은 발생 예고된 경우

마. 체육시설 이용 제한 기준 및 조치 내용 구체화(제9조)

- 조치 내용 : (당초)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 제한 기준 : (당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변경)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3호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3. “운행지점”이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말한다.
4. “수평거리”란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로, 지도상 계측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
2.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1일 2회 이하인 마을
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워 긴급 교통수단이 필요한 마을
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먼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고등학생의 통학이 어려운 마을
5.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가 어려운 마을

제4조(거리산정 기준 및 운행지점 지정) 제2조제3호의 운행지점에 대한 거

리산정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운행지점과의 거리는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로 산정한다.
2.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경우 이를 운행지점으로 지정한다.
3.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가 300m 이상인 지역에 주택이 50%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마당 또는 회차지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지점은 버스승강장과 수평거리 3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4.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의 운행지점은 1개소로 지정한다.
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운행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각 주택부지 경계가 50m 이내로 연결되어 5호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운행지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제6조(희망택시 운행방법) ① 희망택시는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희망택시 운행목적지) 희망택시 운행 목적지는 대상마을의 해당읍면 소재지 또는 예천읍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행 목적지보다 근접한 거리(택시운임요금기준)도 운행할 수 있다.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마을의 이·반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 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신청) 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희망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지원 중단) ① 군수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희망택시 이용실적이 현저히 낮아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

구 분	이용자 부담요금
제5조제1호에 따른 마을 주민	1,000원/1인당 ※ 단 1인 탑승 시 1,500원
제5조제2호에 따른 중·고등학생	100원/1인당

[별지 제1호 서식]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 대상마을 : 면 리

신청인	성명		차량번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탑승비용 신청내역		운행횟수	탑승인원	지원금 산출내역	
				은행요금	지원 신청액
예금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 비용을 정히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예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희망택시 운행일지 1부. 2. 희망택시 운행기록지 1부. 3. 통장사본 1부.					

◇개정이유

- 희망택시 운행 범위를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운행 기준을 신설하여 희망택시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운행대상 마을 확대(제3조)

- (당초) : 버스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 (변경) : 버스승강장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마을,
농어촌버스 1일 2회 이하 운행 마을 등

다. 운행 기준 신설(제4조)

- 수평거리 기준, 마을회관 부재 시 공동마당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 주택 밀집지역의 운행지점 추가 지정 등

라. 이용대상 확대(제5조)

-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통학하는 고등학생과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을 이용대상에 추가

마. 이용요금 신설(제6조)

- 중·고등학생 이용요금을 1인당 100원으로 신설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4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 단서의 후단 중 “사용”을 “모성보호시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 7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6,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1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결혼준비 포함)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u>20</u>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u>25</u> 일)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 운영 기준(제21조제11항 관련)

1. 재직기간 별 휴가부여 일수

재직기간	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기간 중 30일

2.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름

3. 1회의 장기재직휴가는 3일 이상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3일 미만의 잔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조사 휴가 확대(제21조제1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적용

나. 장기 재직휴가 확대(제21조제11항)

- 2025 노사발전협의 결과 반영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허용(제21조제14항)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적용

라.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제21조제16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적용

예천군의회의에서 의결된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5호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으로”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202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정된 지방세 감면 업무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8조)

-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 감면,
그다음 3년간 100분의 25 감면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감면(제10조)

- 보통세를 우선 공제,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6호

예천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예천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예천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 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

지원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에는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영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예천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관할 지역의 읍·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

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제21조의 업무 및 군수가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통합지원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 기관의 대표자

3. 예천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업무담당 조직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천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예천군수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정이유

- 상위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에 의거하여 예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제2조~제3조)

-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추진

나.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통합지원회의 실시 규정(제4조~제10조)

- 대상자 발굴·자원 발굴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시행 및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을 위한 통합지원회의 실시

다.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규정(제11조~제13조)

-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예천군의회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7호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6,0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3.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중 “4회차”를 “4회차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행한다”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과되고 20세대 이상으로”를 “경과하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험 정도가 심각하거나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는 경과 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60일”을 “30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3 이상”을 “2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노후화, 화재·설비 등 안전관리 위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현행 공동주택비용 지원사업 범위 확대 및 한도 설정을 통한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한도 설정(제5조~제6조)

- 지원범위 확대 : '20세대 이상' 문구 삭제
- 보조금 지원 한도 마련 : 지원금 상한액 60,000천원
- 지원항목 추가 : 외벽도색, 누수에 따른 방수

나. 공동체활성화사업 지원한도 설정(제5조~제6조)

- 횃수별 차등 지원(비율)기준 중 '5회차 신청, 50%이내 지원'은 삭제하고, 지원금 상한액(5,000천원)을 신설

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내실화(제6조의2)

-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의 근거 마련
 -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라.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 단축(제18조)

- 층간소음 갈등 해소 등 분쟁조정신청 활성화 유도를 위한 조정기한 단축
 -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 → 30일 이내 심의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2-738호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

마.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요청의 동의 비율 완화(제24조)

-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한 지자체 감사요청 입주민 등의 동의 비율 완화
 - 감사 요청 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 → 10분의 2 이상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8호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예천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운영·지원하는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본청을 포함한 소속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제도·사업 등을 매년 정기적·수시적으로 점검하여 주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함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일몰의 적용범위(제1조~제3조)

나. 군수의 책무, 일몰의 결정(제4조)

- 전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일몰 여부를 결정

다. 일몰대상 시책(제5조)

- 목적달성, 성과 미흡, 중단 필요, 주민의 호응 없이 불편 증대 등

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6조 ~ 제8조)

-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경미한 시책은 소관부서 장이 결정 가능
-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참석 가능

마.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9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39호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 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
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
3. 아동 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바르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복지 증진과 범죄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제5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해제에 관한 사항

나. 사업추진(제6조)

-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의 종류

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제7조)

라. 시설물 설치(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제9조)

-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740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별표5의 운영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별표 5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1조제5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¹⁾	배우자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사 망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1)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장기재직휴가 운영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1. 재직기간 별 휴가부여 일수

재직기간	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기간 중 30일

2. 재직기간의 산정방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름

3. 1회의 장기재직휴가는 3일 이상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3일 미만의 잔여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5. 장기재직휴가 신청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복무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기 재직휴가 등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기 재직휴가 확대(제11조제2항)

- 2025 노사발전협의 결과 반영

나. 경조사 휴가 확대(제11조제5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적용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 허용(제11조제7항)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적용

라.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제11조제8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적용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3월 30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369호

예천군보 규칙 일부개정규칙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월요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군보의 정기 발간일을 당초 매주 월요일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군보 게재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발간주기에 관한 사항 변경(제3조)
 - 군보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